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14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2호('25.9.16)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직무기술서상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무조정실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임기제 가급 (소통협력관)	1명	임용일 ~ '26.6.30.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세종)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국민참여·대외(국제)협력·소통·홍보	전문임기제 가급 (소통협력관)	ㅇ「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관 역할 수행 ㅇ 국민참여 의견수렴 업무 - 대국민 참여기구(기후시민회의) 구성·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및 탄소중립 관련 국민의 정책 참여·공론화 ㅇ 대국민 홍보·소통 및 교육 업무 - 탄소중립 관련 언론 홍보·대응, 대국민 홍보사업, SNS 운영 등 디지털 소통 ㅇ 대외(국제)협력 업무 -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등 다자 협력,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OECD,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10.29.) 기준]

<table>
<tr><th>채용분야</th><th colspan="3">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th></tr>
<tr><td rowspan="4">국민참여·대외(국제)협력·소통·홍보</td><td rowspan="4">응시자격요건</td><td rowspan="2">경력</td><td>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경력요건 ①·②로 응시할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td></tr>
<tr><td>※ 직무분야 경력 : 언론·홍보 분야(언론·미디어·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국제교류·국제협력) 관련 경력</td></tr>
<tr><td rowspan="2">학위</td><td>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직무분야 학위 : 언론·홍보 분야(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언론정보학 등 언론·미디어·홍보 관련 학과) 및 국제협력 분야(국제관계학과, 국제통상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국제교류·협력 관련 학과 및 기타 어문학 등 유사관련학과) 관련 학위
※ 직무분야 경력 : 언론·홍보 분야(언론·미디어·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국제교류·국제협력) 관련 경력</td></tr>
</table>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기준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응시
  예시) **경력①✓**/경력②/경력③/학위①/학위②/학위③ → 경력·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5.10.2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권고사항)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는 **(1)근무기간 (2)근무형태(주근로시간 및 전임여부) (3)담당업무(예: 국민참여·대외(국제)협력·소통·홍보 등)**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회사 직인 및 연락처가 기재 필수)
- **경력요건①·②로 응시**(민간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①~③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 근무 경력 필요

> ※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 -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 행사**
>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9.26.) 기준]

우대요건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ㅇ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점수별 차등 우대) ㅇ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9.26.)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점수별 차등우대)
  ※ **TEPS** 340점, **TOEIC** 700점 이상, **TOEFL** (IBT) 71점 이상, **G-TELP** Level2(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대요건으로 적용함
  ※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은 검증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영어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점수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실적에 한하여 인정
  ※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전문임기제 가급)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 관련 세부평가 병행 실시
- 평가방법 : 면접시험 중 일부 질의는 영어 답변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9.16(화) ~ 9.26.(금)	'25.9.16(화) ~ 9.26.(금)	'25.10.23.(목)	'25.10.29(수)	'25.11.7.(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9. 16.(화) ~ 9. 26.(금), 0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우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 / 문의전화 : 044-200-2801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9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10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관련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관련 수상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 지원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11. 7. ~ 11. 21.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 ~ '26.6.30.**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상한액 없음	67,307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044-200-280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7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국민참여·대외(국제) 협력·소통·홍보	전문임기제 가급	1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세종시)

주요 업무	ㅇ「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관 역할 수행 ㅇ 국민참여 의견수렴 업무 - 대국민 참여기구(기후시민회의) 구성·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및 탄소중립 관련 국민의 정책 참여·공론화 ㅇ 대국민 홍보·소통 및 교육 업무 - 탄소중립 관련 언론 홍보·대응, 대국민 홍보사업, SNS 운영 등 디지털 소통 ㅇ 대외(국제)협력 업무 -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등 다자 협력,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OECD,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필요 지식	○ 언론 및 홍보 관련 전문지식 ○ 국제업무 관련 이해도와 전문지식 ○ 기후·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응시요건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직무분야 경력 :** 언론·홍보 분야(언론·미디어·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국제교류·국제협력) 관련 경력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 언론·홍보 분야(언론·미디어·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국제교류·국제협력)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 언론·홍보 분야(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언론정보학 등 언론·미디어·홍보 관련 학과) 및 국제협력 분야(국제관계학과, 국제통상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국제교류·협력 관련 학과 및 기타 어문학 등 유사관련학과) 관련 학위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충족 후 초과하는 직무분야 실무 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점수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20.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 ○ 정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실적(상훈) (개인성명이 기재된 상훈일 경우에만 인정, 단체 제외)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며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가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ㅇ 하단 오른쪽 자필서명하여 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ㅇ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10호)	ㅇ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 해당자에 한함,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작성 <별지서식 제7호 활용>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구 분	내 용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1.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텝스(TEPS), 토익(TOEIC). 토플(TOEFL),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성적 점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12. 관련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 작성 <별지서식 제8호 활용>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3. 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의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붙임 4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